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340호 2018. 2. 26(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2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4호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주차장)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5호 공원운동장 사용료 공고 ----- 7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50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2-102호선) 공사완료 공고 - 18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32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13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2.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 요

1. 지적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2. 좌표

연번	지적기준점		세계측지좌표		중부좌표		계양좌표		비고
	명칭	번호	X(m)	Y(m)	X(m)	Y(m)	X(m)	Y(m)	
별지 참조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29-3 대영연립주택 일원
 - 측량연월일 : 2018년 1월 8일
4.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열람안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서구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연번	지적기준점		세계측지좌표		중부좌표		계양좌표		비고
	명칭	번호	X(m)	Y(m)	X(m)	Y(m)	X(m)	Y(m)	
1	지적도근점	398	543276.92	171913.12					재설치
2	지적도근점	419	542864.82	172129.64					재설치
3	지적도근점	420	543223.05	171811.08					재설치
4	지적도근점	421	543249.61	171860.01					재설치
5	지적도근점	445	542982.11	172003.46					재설치
6	지적도근점	446	543011.00	171976.20					재설치
7	지적도근점	9266	543142.91	171885.78			-7302.66	-2877.99	
8	지적도근점	9267	543176.25	171922.52			-7269.24	-2841.32	
9	지적도근점	9268	543157.78	171950.87			-7287.65	-2812.93	
10	지적도근점	9269	543130.93	171989.98			-7314.42	-2773.77	
11	지적도근점	9270	543092.93	171938.77			-7352.52	-2824.91	
12	지적도근점	9271	543059.37	171972.49			-7386.01	-2791.12	
13	지적도근점	9272	543034.26	171999.41			-7411.07	-2764.15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3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2.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가현로 93 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2. 26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8-02-2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00-1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93 (마전동)	20081231	옛 지명(자연부락)에서 유래	
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3-1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 216 (원창동)	20090922	원창동과 석남동의 머릿글자를 따 명명	
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47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245번길 13-22 (원창동)	20090922	북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71-13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65번길 27 (왕길동)	20081213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23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45번길 3-2 (마전동)	20081231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67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207번길 47 (원창동)	20131202	북향로 시작지점에서 약2,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88-11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32번길 73 (원창동)	20131202	북향로 시작지점에서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88-10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32번길 77 (원창동)	20131202	북향로 시작지점에서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95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193번길 12 (원창동)	20171025	북향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87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193번길 22 (원창동)	20171025	북향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32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193번길 25 (원창동)	20171025	북향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33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193번길 35 (원창동)	20171025	북향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34호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주차장)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15호(2016.9.1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 주차장, 사업명: 정서진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8. 2.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30-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 정서진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3	주차장	서구 가정동 530-4번지 일원	2,261	2016.9.1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당초 : 2018. 1. 08. ~ 2018. 2. 15.
- 변경 : 2018. 1. 08. ~ 2018. 4.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연 번	소재지	(가)지 번	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가정동	703-0	대	2,261	2,26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35호

공원운동장 사용료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5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대상공원: 율도근린공원
2. 대상시설: 운동장
3. 운동장 사용료

공원명	운동장 면적 (㎡)	사용료(원/2시간)			
		평일		휴일	
		체육경기	체육경기 外	체육경기	체육경기 外
율도근린공원 A운동장	4,950	40,000	80,000	60,000	140,000
율도근린공원 B운동장	2,400	30,000	60,000	50,000	120,000

4.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용 기준 및 감면 등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적용
5. 적용시기: 2018. 4. 1일 사용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개정)이유

- 상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 반영 및 일부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 제2조】
- 세부허가요건 일부조문 삭제 등 정비 【안 제3조 별표】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별표]”를 “별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요건 등

사업의 종류	허가요건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소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허가받은 용기충전업소가 위해방지 및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자동차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한다. 3. 충전사업장의 대지 및 저장·충전설비는 자가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경우는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4】 제1호가목 1)의 다), 라), 마)에 따른 안전거리의 2배를 적용한다. 5. 변경허가 대상 중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노후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용량증가 또는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등 시설의 변경시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는 전용·준공업지역에 한한다. 다만, 기존 허가받은 업소가 공공사업시행지구내에 포함되어 이전할 경우에는 녹지·관리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2. <u>삭제</u>. 3. 판매업소 부지는 도로폭 8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38㎡ 이상, 사무실 18㎡, 주차면적 23㎡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업소가 공공사업시행지구내에 포함되어 이전할 경우에는 도로폭 4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부지로 이전할 수 있다. 4. 판매업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u>따른</u> 1층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다. 5. 용기보관실은 「건축법」에 <u>따른</u>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변경허가 대상 중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저장설비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 제6조제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란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u> 」 제2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란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u> 」 제2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 <u>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u> ----- 2. ----- ----- <u>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u> -----		
제3조(허가요건 등)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허가요건 등)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허가요건 등) ----- -- <u>별표</u> -----		

관계법령 발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결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로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나.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 다. 소형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 라.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바.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
2.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 강제 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다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집단공급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집단공급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70개소 이상의 수요자(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수가 70가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나. 70개소 미만의 수요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용기 판매사업: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
- 나.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다음 1) 및 2)의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
- 1) 가목의 사업
 -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16. "보호시설"이란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3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2.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른 미반영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 제2조】
- 세부허가요건 일부조문 삭제 등 정비 【안 제3조 별표】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경제에너지과, 전화 032-560-4463, Fax 032-560-27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350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2-102호선)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6-59호(2016.4.2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6-89호(2016.6.20.)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사 완료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소2-102호선, 사업명: 대곡동~김포한강신도시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8. 2.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7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2-102호선)
 - 명 칭 : 대곡동 ~ 김포한강신도시 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로	소로	2	102	8~13.5	국지도로	84.2	대곡동 741	대곡동 95-4	일반도 로	2016. 4.20.	-

4. 사업시행자
 - 성 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기간 : 2016. 6. 20. ~ 2017. 12. 31.